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 08. 04.
제 안 자 : 이만재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가. 평창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의정모니터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제보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제보사항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의정모니터 간담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평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의정모니터 구성은 24명 이내로 하되, 각 읍·면별 여성 1인을 포함한 2~3인으로 한다.

②의정모니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거주지역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또는 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정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의장은 의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주소를 다른 읍·면 또는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기타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의정모니터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의회의 의정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주민 불편사항이나 여론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견 조사
4. 기타 미담사례 및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의정모니터의 제보활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이송 받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담회 등) 의장은 매 분기별 1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①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